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경찰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경찰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연구관 권태형

목 차

일러두기	1
제1장 서론	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제2장 스마트폰의 개념과 관련 동향	8
제1절 스마트폰의 개념	8
1. 스마트폰이란?	8
2.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 접속방법	9
제2절 스마트폰 관련 동향	10
1.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10
2. 국내 기업의 동향	18
3. 정부의 동향	20
4. 경찰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	21
5. 경찰의 모바일 서비스 활용예상 조사결과	23
제3장 공공정보 관련 국내외 동향	25
제1절 국내 공공정보 개방 동향	25
1. 관련 법·제도 고찰	25
2. 공공정보 개방·활용관련 기관	32
3. 공공정보 제공현황과 활용사례	39
4. 스마트폰 앱 공모전 사례	46

제2절 외국의 공공정보 개방 사례	52
1. 미국	52
2. 영국	59
3. 호주	60
제4장 모바일 경찰 서비스 활성화 방안	62
제1절 모바일에서 유용한 경찰의 공공정보	62
1. 공개수배자 정보	62
2. m.182.go.kr 실종아동 정보 검색방식 개선	65
3.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67
4. 유실물 정보	68
5. 지도 정보	69
제2절 경찰 공공정보 제공 방안	71
1.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제고	71
2. 경찰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정	71
3. 공공정보 관리방안	73
4. 앱 공모전을 통한 다양한 경찰서비스 창출 촉진	74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7
[부록] 공공정보 제공 지침	81

표 차례

<표 1> 스마트폰 사용(예정)자의 경찰 모바일 서비스 선호도 순위	24
<표 2> 국가지식포털 DB구축 현황 (2009.12.31기준/건)	33
<표 3> 유형별 지식정보현황	33
<표 4> 분야별·제공기관별 공공정보 수	35
<표 5>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개발자에게 제공된 공공정보	39
<표 6>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개발자에게 제공되지 못한 공공정보	42
<표 7> 경찰에 요청된 정보와 정보제공불가 이유	44
<표 8> 대한민국 앱 경진대회 개발부문 수상작 목록	46
<표 9> 대한민국 앱 경진대회 기획부문 수상작 목록	48
<표 10>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정보	50
<표 11> 미국 data.gov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 분류체계	52
<표 12> 호주 공공정보포털의 공공기관 연계서비스 목록	61

그림 차례

<그림 1>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준비지수 순위	2
<그림 2>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참여지수 순위	3
<그림 3> 컴퓨터 환경의 시대적 변천	4
<그림 4> 스마트폰과 일반휴대폰의 인터넷 연결의 차이	10
<그림 5> 스마트폰 이용 이유(복수응답, %)	12
<그림 6> 스마트폰 주요 이용기능(복수응답, %)	13

<그림 7> 스마트폰 이용 행동 및 인식(%)	14
<그림 8>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빈도(%)와 일평균 스마트폰 인터넷이용시간 (%)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	15
<그림 9>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장소(복수응답, %)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	16
<그림 10> 모바일 앱 이용목적(복수응답, %) -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용자	17
<그림 11> 경찰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페이지 사례	22
<그림 12> 국가지식포털 홈페이지	32
<그림 13>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36
<그림 14>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지원절차	37
<그림 15> SMAC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 API 목록	38
<그림 16> 민간이 개발한 서울시 관련 아이폰 어플리케이션(1)	45
<그림 17> 민간이 개발한 서울시 관련 아이폰 어플리케이션(2)	45
<그림 18> 미국 공공정보제공포털 www.data.gov	54
<그림 19> FlyOnTime.us의 항공기 연착률 정보	55
<그림 20> MyEnvironment의 지역환경정보	56
<그림 21>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시 범죄정보(oakland.crimespotting.org)	57
<그림 22> 뉴욕시의 두 번째 앱 경진대회 BigApps2.0	58
<그림 23> 영국 공공정보포털(data.gov.uk)	59
<그림 24> 호주 공공정보포털(data.australia.gov.au)	60
<그림 25> 사이버경찰청의 공개수배자 목록	63
<그림 26> 경찰청 모바일 실종아동찾기센터의 실종아동검색	66
<그림 27> 메뉴선택을 이용한 검색방식 시나리오의 예	66
<그림 28>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알리미 넷두루미	67
<그림 29> 사이버112 습득물 검색 서비스(리스트)	68
<그림 30> 사이버112 습득물 검색 서비스(습득물 상세정보)	69

일러두기

이 보고서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하여 급변하고 있는 모바일환경과 공공정보 개방·활용에 대해 잘 모르는 직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보고서이다. 경찰의 공공정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부처·공공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치안정책연구소의 보고서 작성방식을 따르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서를 활용하는 곳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표와 그림을 사용하였다.

이 책에는 여백이 많이 있다. 지면 여백을 없애기 위해 그림 크기를 줄이면 그림내용이 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집임을 밝힌다.

이 책에 명시된 인터넷 주소나 홈페이지 경로는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이 책을 흑백으로 인쇄하여 볼 경우 사진과 그림을 알아보기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컬러로 인쇄해서 보거나 PC를 이용하여 컬러모니터로 보기를 권장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은 시공간을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자민원 G4C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민원서류를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UN이 발표한 2010년 전자정부평가에서 필란드, 미국, 노르웨이 등과 같은 국가정보화 선진국을 제치고 전자정부 준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림 1>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준비지수 순위

Table 4.1 Top 20 countries in e-government development

Rank	Country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value	Rank	Country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value
1	Republic of Korea	0.8785	11	Singapore	0.7476
2	United States	0.8510	12	Sweden	0.7474
3	Canada	0.8448	13	Bahrain	0.7363
4	United Kingdom	0.8147	14	New Zealand	0.7311
5	Netherlands	0.8097	15	Germany	0.7309
6	Norway	0.8020	16	Belgium	0.7225
7	Denmark	0.7872	17	Japan	0.7152
8	Australia	0.7863	18	Switzerland	0.7136
9	Spain	0.7516	19	Finland	0.6967
10	France	0.7510	20	Estonia	0.6965

출처: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0*, 2010. p. 60.

〈그림 2〉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참여지수 순위

Table 5.1 Top 20 countries in e-partici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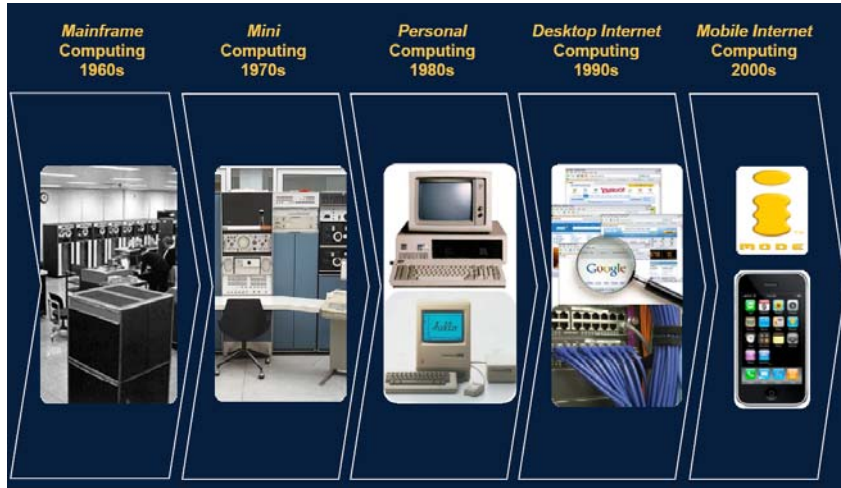
Rank	Country	2010 e-participation index value	2010 rank	2008 rank	Change +/(-)
1	Republic of Korea	1.0000	1	2	1
2	Australia	0.9143	2	5	3
3	Spain	0.8286	3	34	31
4	New Zealand	0.7714	4	6	2
4	United Kingdom	0.7714	4	25	21
6	Japan	0.7571	6	11	5
6	United States	0.7571	6	1	(5)
8	Canada	0.7286	8	11	3
9	Estonia	0.6857	9	8	(1)
9	Singapore	0.6857	9	10	1
11	Bahrain	0.6714	11	36	25
12	Malaysia	0.6571	12	41	29
13	Denmark	0.6429	13	3	(10)
14	Germany	0.6143	14	74	60
15	France	0.6000	15	3	(12)
16	Netherlands	0.6000	15	16	1
17	Belgium	0.5857	17	28	11
18	Kazakhstan	0.5571	18	98	80
19	Lithuania	0.5286	19	20	1
20	Slovenia	0.5143	20	55	35

출처: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0*, 2010. p. 85.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PC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거의 모든 가정과 사무실 등에 유선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으며 수많은 PC방이 24시간 영업 중에 있다고 해도 유선인터넷은 장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욕구에 맞추어 무선인터넷 기술이 등장하고 유비쿼터스(Ubiquitous)¹⁾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 유비쿼터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유비쿼터스 개념은 1988년 제록스 팰 러앨토 연구소(PARC)의 마크 와이저가 처음 제시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유비쿼터스란 실세계의 각종 사물에 컴퓨터를 장착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성열 외, *모바일인터넷 프로그래밍 : 무선인터넷프로그래밍/WML/WMLScript*, 내하출판사, 2007, 3-4면.

<그림 3> 컴퓨터 환경의 시대적 변천



출처: Morgan Stanley, *The Mobile Internet Report*, 2009, p. 16.

정부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u-Korea를 구현하기 위해 2012년까지 1,972억원을 투입하는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²⁾ 이렇게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경찰 치안행정분야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유비쿼터스 치안(u-Police³⁾)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⁴⁾

한편 스마트폰은 현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미국 애플社 스마트폰인 아이폰

2) 대한민국정부, 200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124면.

3)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을 이용한 경찰서비스(u-Police Service)의 효과는 현재의 경찰 서비스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과학적 치안서비스의 활용은 그동안 경찰력 위주의 인(人)경비치안활동을 넘어 부족한 경찰력으로 경찰활동이 미치지 못했던 범죄사각지대의 범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안전감에 있어서도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범죄자에게 사전에 범죄심리를 억제시켜 사실상 범죄예방활동에 큰 효과를 보일 것이다.”, 박성수, “유비쿼터스 경찰서비스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 326면.

4) 경찰청, 미래비전 2015, 2009, 208-209면.

이 들어온 이래 불과 1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열풍이 대단하게 불고 있다.

2010년 초만 해도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2009년 11월 로아그룹은 전문가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약 180~200만대 규모로 예측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내놓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올해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400만대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2010년 11월말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는 SK텔레콤 340만명, KT 240만명 LG유플러스 50만명 등 총 630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 내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서고, 최근의 증가 속도 추세라면 2011년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1400~160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⁵⁾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초기인 2009년 12월에 고등학생 유주완은 버스운행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서울버스(Seoul Bus)라는 아이폰용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 응용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스운행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버스정보를 경기도에서 차단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기도의 조치에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언론의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자 경기도지사는 버스정보 차단을 해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정보의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overnment 2.0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부의 서비스와 웹 2.0⁶⁾ 기술에 근간을 둔 Government 2.0(Gov

5) 강제훈, “올해 스마트폰 700만 시대 열린다”, www.newsis.com (2010. 12. 5 검색) 참조.

2.0)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이 기대되고 있다.⁷⁾ 국가정보화가 추진되면서 민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의 종류와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공공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찰의 공공정보를 파악해 보고 경찰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경찰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스마트폰의 개념과 관련 동향을 살펴본다. 스마트폰이 기존의 휴대폰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스마트폰 이용실태에 대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 스마트폰

6)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모아 보여주지만 하는 웹 1.0에 비해 웹2.0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블로그(Blog), 위키피디아(Wikipedia), 딜리셔스(del.icio.us) 등이 이에 속한다. 네이버 백과사전(100.naver.com , 2010.11.20 검색).

7) Gov 2.0은 정부 및 공공 부문에 웹 2.0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되는 새로운 정부의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William D. Eggers가 정보기술로 인해 변화될 미래 정부의 모습을 논의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기존의 정부와 사용자간의 일방향성 정보전달 과정과는 달리 Gov 2.0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사용자가 정보의 생산·공유·참여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전중수 외, "Gov 2.0 시대의 공공정보 및 공공서비스 활성화 전략", CIO리포트 2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에 대한 국내기업과 정부의 동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경찰의 모바일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고, 모바일 경찰서비스에 대한 활용예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공공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다. 먼저 국내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법·제도를 고찰하고 공공정보 개방·활용과 관련 있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어떠한 공공정보가 제공되고 제공되지 못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이용한 사례를 알아본다. 그리고 공공정보를 활용한 주요 스마트폰 앱 경진대회들이 어떻게 열렸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외국의 공공정보 개방사례를 통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모바일 경찰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면 유용할 경찰의 공공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본다. 그리고 경찰의 공공정보를 제공·관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련 자료 및 문헌을 수집하고 고찰하였다. 둘째,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석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 업무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아서 분석하였다.

제2장 스마트폰의 개념과 관련 동향

제1절 스마트폰의 개념⁸⁾

1. 스마트폰이란?

일반 휴대폰은 음성통화와 메시지(SMS, MMS) 기능을 주요기본기능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제품에 따라서 특화한 기능을 탑재하여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사용방법을 보완하여 실버폰이라 하고, 음악기능을 강화하여 뮤직폰이라 하며, 게임을 많이 탑재하여 게임폰으로 세분해서 개발·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능이 많이 포함된 휴대폰을 처음부터 선택하고 사용해야 한다.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는 이렇게 마케팅 대상에 따라 상품기획을 한 후 휴대폰을 개발한다.

스마트폰은 전화기능을 추가한 작은 PC라고 할 수 있다. PC를 구입하면 처음에는 OS가 제공하는 기본SW만 있으나 사용자가 어떠한 SW를 설치해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PC의 활용도는 무한하게 달라진다. 이처럼 스마트폰도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하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설치하여 게임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업무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설치하면 업무용 폰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

8) 권태형 외,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찰서비스 활용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치안정책연구소, 2010, 245-247면 참조.

반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기능의 확장성에 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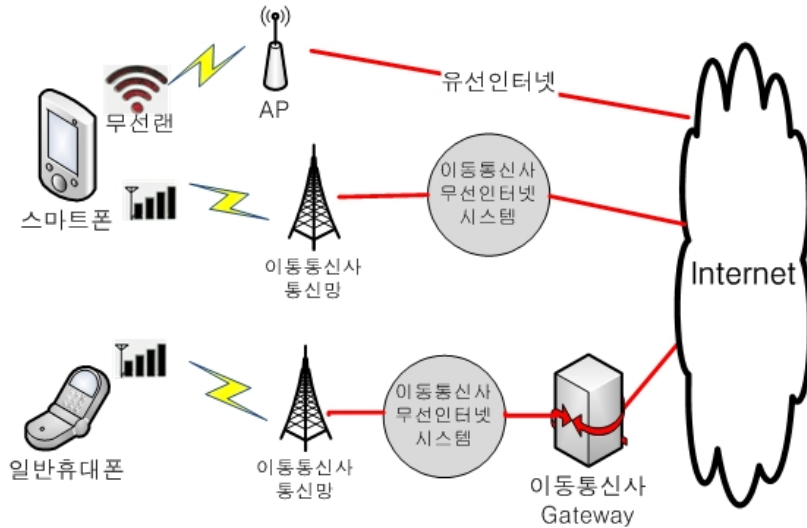
2.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 접속방법

기존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존 휴대폰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싼 요금을 내고 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야만 한다.⁹⁾ 반면에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무선랜(WiFi)을 이용하여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¹⁰⁾ 즉, 일반휴대폰 사용자가 ‘요금폭탄’을 걱정하면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자는 무료 AP에 접속하여 데이터요금을 걱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9) “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에 대한 이런 태도는 IT강국이라는 한국을 모바일 인터넷의 ‘고립된 섬’으로 전락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한국의 무선인터넷의 보급률은 2%로 경제협력 기구(OECD) 평균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휴대인터넷 이용률은 여전히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54%를 상회한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초로 80%를 넘어선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김태열, “스마트폰 ‘열려라, 무료 무선인터넷’”, Weekly 경향, 2010년 872호, 24면.

10)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자동차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도로는 유료도로와 무료도로가 있다. 일반휴대폰 사용자는 무료도로(무선랜)를 사용하지 못하고 비싼 유료도로(이동통신망)만을 이용해야만 했다. 반면에 무선랜 접속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잘 닦인 무료도로(무선랜)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차선도 좁고 속도도 느린 유료도로보다 차선도 넓고 속도도 빠른 무료도로가 있다면 누구나 무료도로를 이용할 것이며 통행료 걱정 없이 많은 곳을 다닐 것이다.

<그림 4> 스마트폰과 일반휴대폰의 인터넷 연결의 차이



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은 무선랜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과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방법이 있다. 반면에 일반휴대폰 사용자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은 일반 인터넷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 있는 브라우저로 볼 수 있지만, 일반휴대폰에서는 무선인터넷용 마크업 랭귀지로 만든 웹페이지를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접속한다.¹¹⁾

제2절 스마트폰 관련 동향

1.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하루에도 수 많은 스마트폰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11) 최근에는 일반휴대폰에서도 스마트폰처럼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다. 이러한 기사나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0년 7월에 내놓은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조사대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 12세~59세 이용자
- 유효표본수: 1,578명
- 조사방법: 인터넷
- 조사기간: 2010년 5월 10일 부터 2010년 5월 19일 (1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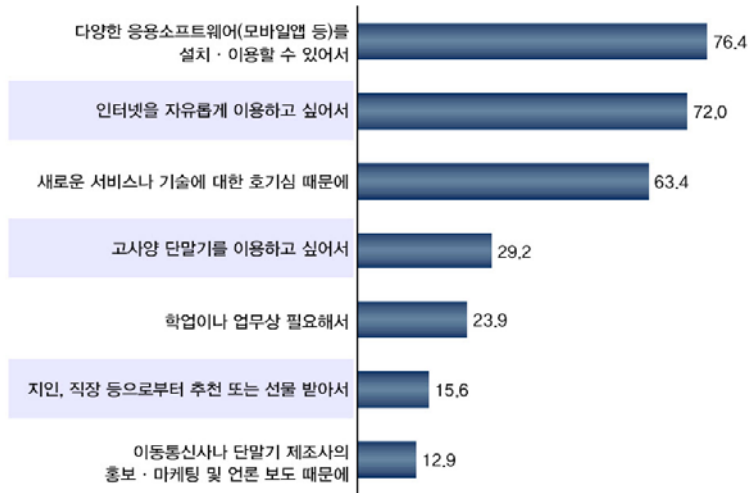
가. 스마트폰 이용 이유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모바일 앱¹²⁾ 등)를 설치·이용할 수 있어서(76.4%)’,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어서(72.0%)’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63.4%)’ 또는 ‘고사양 단말기를 이용하고 싶어서(29.2%)’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된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12)본 조사에서의 ‘모바일앱(Mobile App)’은 스마트폰에 최적화 된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로서 게임, e-book,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바일 앱을 구입하고 스마트폰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2면.

<그림 5> 스마트폰 이용 이유(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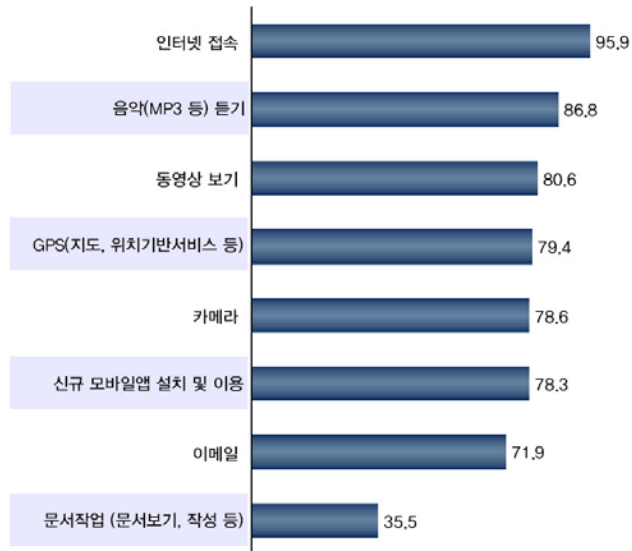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3면.

나. 스마트폰 주요 이용 기능

스마트폰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95.9%)’기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GPS(지도, 위치기반서비스 등)(79.4%)’나 ‘신규 모바일앱 설치 및 이용(78.3%)’, ‘이메일(71.9%)’, ‘문서작업(35.5%)’ 등 스마트폰에 특화된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소 많았다.

<그림 6> 스마트폰 주요 이용기능(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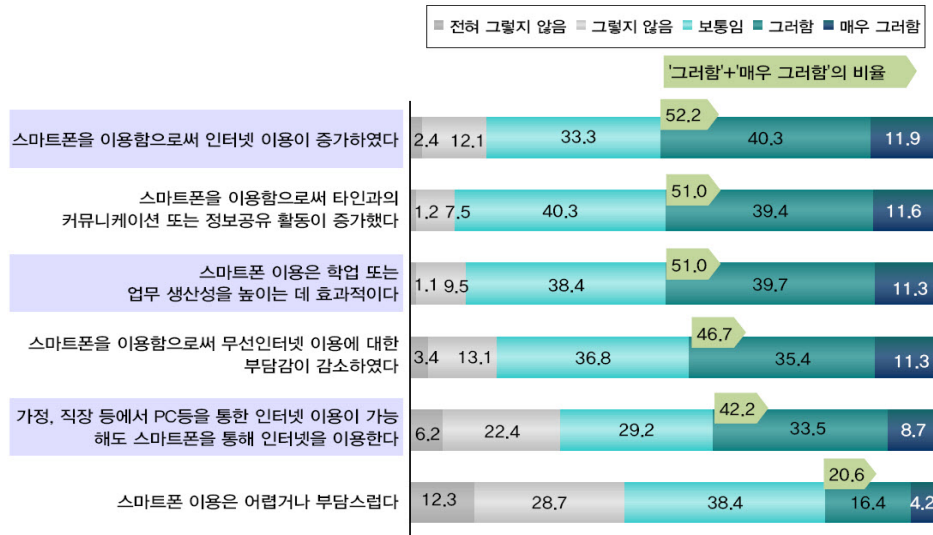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6면.

다. 스마트폰 이용 행동 및 인식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반수가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거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정보공유 활동이 증가(51.0%)’하였으며, ‘스마트폰 이용은 학업 또는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51.0%)’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46.7%)’하거나 ‘가정, 직장 등에서 PC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도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42.2%)’하는 등 스마트폰 이용이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스마트폰 이용 행동 및 인식(%)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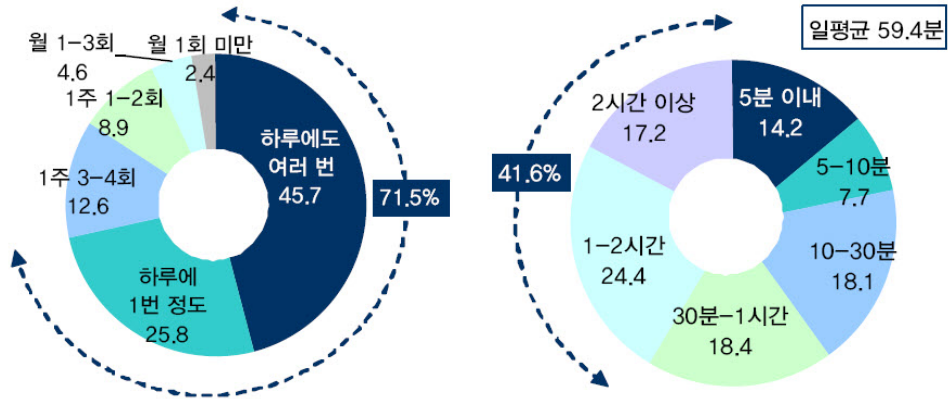
라.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 현황

스마트폰 이용자의 91.3%가 최근 1개월 이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73.4%는 최근 일주일 이내에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시 주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웹사이트인 ‘모바일 웹사이트(41.9%)’를 이용하며, ‘모바일 앱(36.0%)’, ‘일반 웹사이트(22.1%)’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의 71.5%가 하루 1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59.4분이며, 일 평균 1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41.6%로 나타났다.

<그림 8>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빈도(%)와 일평균 스마트폰 인터넷이용시간(%)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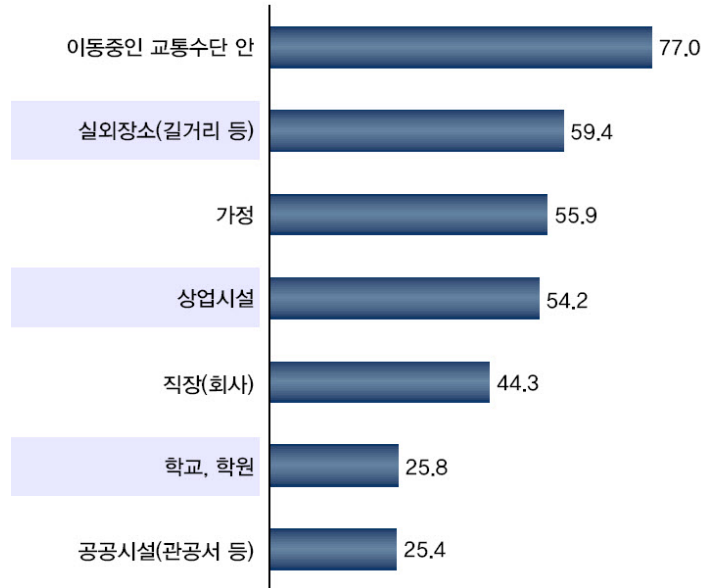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9면.

마.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방법과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 장소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방법으로 '무선랜(WiFi)'을 가장 선호(65.4%)하며, 무선랜을 주로 이용(6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주된 인터넷 이용장소는 '이동중인 교통수단 안(77.0%)'이며, '실외장소(길거리 등)(59.4%)', '가정(55.9%)', '상업시설(54.2%)'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장소(복수응답, %)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10면.

바. 모바일앱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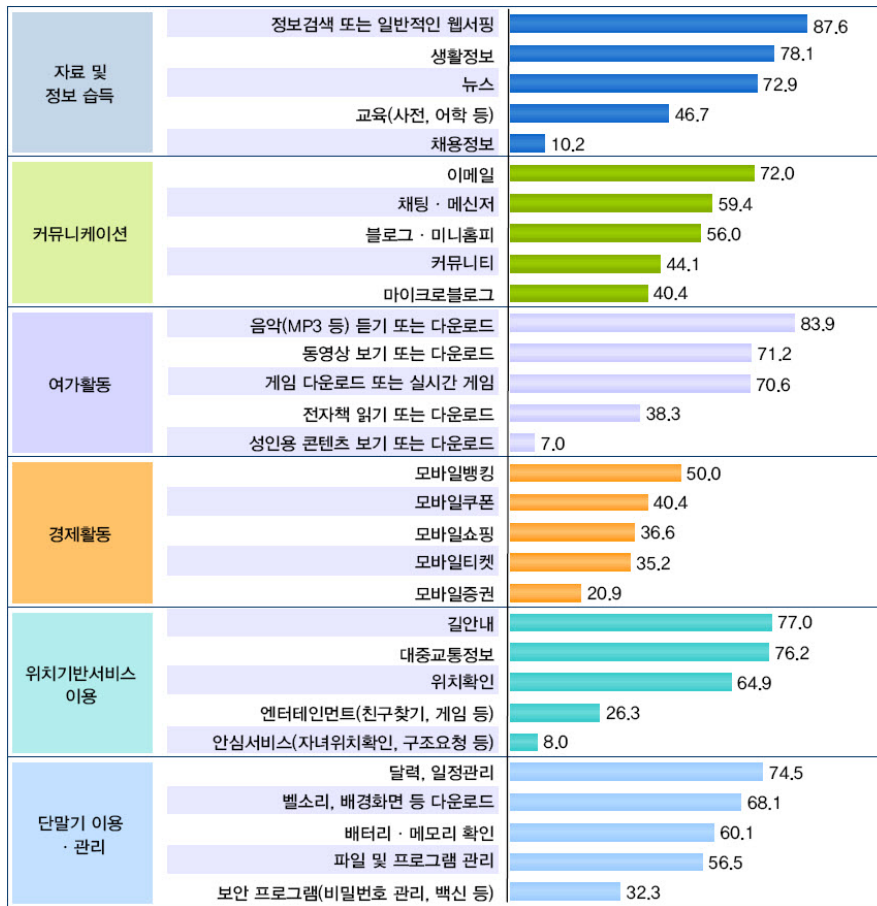
스마트폰 이용자의 66.0%가 최근 1개월 이내(‘최근 1주일 이내’ 40.5%, ‘1주일-1개월’ 25.5%)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중 25.2%가 하루에 한 번 이상(‘하루에도 여러번’ 11.7%, ‘하루 한 번 정도’ 13.5%)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중인 스마트폰에는 평균 23.1개의 모바일앱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앱은 평균 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료 모바일앱은 평균 19.9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유료 모바일앱은 평균 3.2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모바일 앱 설치자의 29.5%는 모바일 앱을 구입하기 위해 월 평균 10,000원 이상(‘10,000원~20,000원 미만’ 20.2%, ‘20,000원 이상’ 9.3%)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모바일 앱 이용목적은 ‘정보검색 또는 일반적인 웹서핑(87.6%)’이며, 다음으로 ‘음악(mp3 등) 듣기 또는 다운로드(83.9%)’, ‘생활정보(78.1%)’, ‘길안내(77.0%)’, ‘대중교통정보(76.2%)’, ‘달력, 일정관리(74.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10> 모바일 앱 이용목적(복수응답, %) -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용자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17면.

사. 스마트폰 이용 전망

스마트폰 이용자 중 41.7%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용자는 43.9%이고,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재구매 의향자는 89.0%이며, 스마트폰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이용자의 97.0%가 향후 재구매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85.5%는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스마트폰 이용에 만족하는 이용자의 경우 97.4%가 추천의향을 보였다.

2. 국내 기업의 동향

종합온라인몰을 운영하는 홈쇼핑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최근 잇달아 선보였다. 2006년도에도 이미 일반 휴대폰에서 쇼핑이 가능하였으나 사용이 불편하고 종량제로 부과되는 데이터통신요금 때문에 이용이 저조했었다. 그러던 중 스마트폰에서 무료 인터넷(WiFi)이 가능하고 데이터정액요금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쇼핑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게다가 최근 30만원 이하 금액은 바로 스마트폰에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본격적인 모바일쇼핑 시대가 열리게 됐다.¹³⁾

금융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가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3) 김정태, “홈쇼핑업체, 모바일 쇼핑 주도한다”, <http://www.mk.co.kr> (2010. 4. 26 검색).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난 3·4분기 137만명에 달하고, 이용건수는 전 분기와 비교해 약 370%, 이용 금액은 약 300%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¹⁴⁾은 국내 모바일광고 시장 역시 올해 3157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31%나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생활의 변화와 연관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보기술(IT) 관련 벤처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났고 IT 분야 구인인원은 4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e메일 사용, 전자결제, 업무 및 현장보고 등의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모바일 오피스 구축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년간 102억원을 들여서 2010년 1월 스마트폰을 이용한 UTIMS(유지보수시스템)를 도입하였다. 전 직원에게 스마트폰 6,500대를 지급하고 2,000여명의 전담 인력만이 하던 수리 업무를 6,500명의 전 직원이 나눠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다. 글이나 말 대신 바코드와 사진·동영상을 이용하여 고장 신고를 하고, 실시간 업무처리로 기기점검 소요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긴급상황에는 신고자가 스마트폰으로 매뉴얼을 보고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도시철도공사의 새로운 UTIMS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284억원의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미래혁신가치에서는 1,100억원의 가치가 창출되며, 투자 순편익은 1,282억원, 추가적 사회편익은 3,24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¹⁶⁾

모바일 오피스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모바일오피스가 강력한 확장성·효율성으로 기업과 산업 전반에 확산 될 것이며 기

14) 미국 시장조사기업.

15) 권해주, “아이폰 1년새 162만명.. 국산앱 작년비 3배 증가”, <http://www.fnnews.com> (2010.11.25 검색).

16) KT경제경영연구소, 모바일 오피스 구축의 경제적 효과, 2010, 31면.

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제2의 IT혁명을 촉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개인 삶의 질과 행동 양식이 변화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혁신되며 기업문화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⁷⁾

KT경제경영연구소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오피스 및 스마트워크를 본격 도입하면 오는 2014년까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연관 시장을 창출하고 업무체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¹⁸⁾

3. 정부의 동향

스마트폰이 폭발적인 정도로 빠르게 보급되자 정부·공공기관에서는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전용 웹페이지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내용이 충실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부실한 기능으로 사용자로부터 호응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바일 웹페이지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싼 개발비용을 들여가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¹⁹⁾

2010년 3월, 정부는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의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인터넷·콘텐츠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내놓았으며, 4월에는 ‘공공정보 제공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지침 공청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특정 스마트폰에 종속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17) 위의 책, 34-36면.

18) 권해주, 앞의 글.

19) 권태형 외, 앞의 글, 249-250면.

2010년 6월에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7월에는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0년 6월에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열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폰 행정’을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단속, 시설물관리, 각종 조사, 치안 등의 현장지원 업무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²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0년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 인구밀집지역, 공공장소, 터미널, 동사무소,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내 주요 거점지역 2천500곳 이상의 장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2014년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²¹⁾ 또한 서울시에서도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등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²²⁾

4. 경찰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

경찰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트위터(Twitter)²³⁾’를 통해

20) 김인순, “모빌리티 오피스 구축 사례”, <http://www.etnews.co.kr>, (2010. 4. 29 검색).

21) 정종오, “경기도‘전지역에 와이파이존 구축한다’”, <http://itnews.inews24.com>, (2010. 4. 22 검색).

22) 강은성, “서울시도 와이파이...KT와 협의 시작”, <http://itnews.inews24.com>, (2010. 4. 22 검색).

23)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

전국 16개 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도심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웹사이트(m.utis.go.kr)에서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폴인러브’를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최적화한 사이버경찰청 모바일(m.police.go.kr)과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m.182.go.kr)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지방경찰청 중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bspolice.go.kr)이 모바일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운전면허 응시조회, 운전면허정보조회, 운전면허안내, 학과시험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휴대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는 2011년 초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에 있다.

<그림 11> 경찰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페이지 사례



경찰청 인터넷라디오 방송 사이버경찰청 모바일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교통알림e

아직까지 모바일 경찰서비스는 경찰에서 개발·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

설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이다. 트위터란 '지저귀다'라는 뜻으로, 재잘거리듯이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글자수도 최대 140자로 제한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는 '빠른 소통'이 가장 큰 특징으로서 세계적 뉴스채널로 속보를 장점으로 하는 CNN을 앞지를 정도로 신속한 '정보 유통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82241> , (2010. 4. 26 검색).

며, 민간에서 경찰의 공공정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서비스를 개발·구축한 경우는 없는 상황이다.

5. 경찰의 모바일 서비스 활용예상 조사결과

권태형(2010)의 연구에서는 경찰 인터넷 서비스들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²⁴⁾ 이 연구에서는 각 서비스들에 대해 경찰 분야(수사, 교통, 생활안전, 경무)별로 나누어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서비스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표 1>과 같이 스마트폰 사용(예정)자들이 생각하는 선호도에 대해 순위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는 ‘각종 분실물에 대한 정보’ 서비스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예정)자 95.6%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는 ‘교통정보’와 증강현실을 이용한 ‘사용자 현위치 주변 경찰관서 위치 자동안내’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95.1%로 나타났으며, 네 번째로는 ‘교통표지판 오류 현장제보’가 95%로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다섯 번째로는 ‘경찰관서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와 ‘사이버범죄 예방정보’가 각각 93.4%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선호도를 보인 서비스는 ‘공개수배자에 대한 정보’로 91.7%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서 ‘범죄 예방, 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한 정보’(86%), ‘미아·실종자에 대한 정보’(82.6%), ‘운전면허관련 정보’(78.5%), ‘경찰청 공지사항, 채용

24) 이 설문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2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서비스들에 대한 활용예상(유동)도를 스마트폰 사용(예정)자와 스마트폰 구매계획 없는 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이들 집단 간에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권태형 외, 앞의 글.

공고’(62%), ‘경찰홍보’(53.7%)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²⁵⁾

<표 1> 스마트폰 사용(예정)자의 경찰 모바일 서비스 선호도 순위

순위	분야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경찰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유용(관심)도(%)
1	생안	각종 분실물에 대한 정보의 유용도	95.6
2	교통	교통정보의 유용도	95.1
2	경무	사용자 현위치 주변 경찰관서 위치 자동안내에 대한 유용도	95.1
4	교통	교통표지판 오류 현장제보의 유용도	95.0
5	경무	경찰관서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에 대한 유용도	93.4
5	수사	사이버범죄 예방정보의 유용도	93.4
7	수사	공개수배자에 대한 정보	91.7
8	생안	범죄예방, 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한 정보의 유용도	86.0
9	수사	미아·실종자에 대한 정보	82.6
10	교통	운전면허관련 정보의 유용도	78.5
11	경무	경찰청 공지사항, 채용공고 등에 대한 관심도	62.0
12	경무	경찰홍보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53.7

출처: 권태형 외,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찰서비스 활용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0, 263면.

‘이와 같은 경찰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게 된다면 귀하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라는 설문결과 스마트폰 사용(예정)자 112명(92.5%)이 경찰이미지가 좋아진다고 했으며, 스마트폰 구매계획 없는 사람 중 75명(87.2%)도 경찰이미지가 좋아진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유의확률이 $p < .058$ 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경찰이미지가 좋지 않게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중에서 한명도 없었다.²⁶⁾

25) 위의 글, 262면.

26) 위의 글, 261면.

제3장 공공정보 관련 국내외 동향

제1절 국내 공공정보 개방 동향

1. 관련 법·제도 고찰

가.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제4조에서는 전자정부의 원칙의 하나로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 16조에서는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이용자가 손쉽게 최신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8조에서는 국민·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기술·서비스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²⁷⁾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민간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7) 행정안전부, 2010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2010, 83면.

전자정부법[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부개정]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 새로운 서비스의 중요도 및 난이도
3. 새로운 서비스의 예상 이용실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및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기관은 정부의 지식과 정보가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제25조에서는 정부가 지식정보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국민이 최신의 정확한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0.11.10]

[대통령령 제22475호, 2010.11.10, 일부개정]

제17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 1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기를 요청할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라. 공공정보 제공 지침

1) 공공정보 제공 지침 개요

201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제공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10-45호)을 공표하였다(부록 참조).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총 4장 1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공대상 공공정보 및 제공 대상자를 정의하고, 공공정보 제공의 신청 및 처리 방법과 이를 담당

할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정보 제공방법 및 비용부담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 제8조에 의하면,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제공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2조에서는 만일 국가기관이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할 경우 이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서비스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공공정보 제공 지침[시행 2010.7.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2010.7.7]

제8조(공공정보의 제공 신청) ①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또는 지원센터에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이 공표한 공공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전송속도 저하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차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제공방법)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 제공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서비스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공정보 제공 지침의 의의와 한계²⁸⁾

이 공공정보 제공 지침은 공공정보정책 추진의 시급성을 반영한 첫 제도적 성과이며, 공공정보제공의 틀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28) 권현영,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Workshop:공공정보 활용의 법·제도적 쟁점”,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국가DB포럼, 2010, 28면.

인 정책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고시’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

- 공공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각종 법적근거가 취약하며,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과 같은 권리처리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 공공정보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의 산정, 부과,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기상법, 공간정보산업법 등 기존 개별 법률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공정보제공제도(기상사업자,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제공)와의 통일성, 정합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 공공정보제공을 전담할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및 위상이 미비하다.
- 공공정보 보유기관이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불복절차가 미흡하다.

마. 도로교통법

경찰소관인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일반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광역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교통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장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2. 공공정보 개방·활용관련 기관

가. 국가지식포털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²⁹⁾을 통하여 각 기관별로 디지털화된 국가지식 자료를 통합검색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든 기관과 국민이 국가지식정보자원³⁰⁾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2> 국가지식포털 홈페이지



29)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DB로 구축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ttps://www.knowledge.go.kr/jsp/intro/intro01_01.jsp (2010.11.25 검색).

30) 국가지식정보자원은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https://www.knowledge.go.kr/jsp/intro/intro01_01.jsp (2010.11.25 검색).

<표 2>는 국가지식포털에 구축된 DB현황이다.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기타 분야에 걸쳐 모두 1억4천3백만여건의 DB가 구축되어 있다. <표 3>은 유형별 지식정보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국가지식포털 DB구축 현황 (2009.12.31기준/건)

분 야	주요내용	비 고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보고서 국내과학기술 인용색인(KSCI) 신약개발·인체영상 등 첨단과학DB 산업기술 전문정보 등 해양수산 관련 연구현황 및 최신기술정보 해양수산 학술연구자료 등	87,592,558
교육학술	학술지 목록 및 원문자료 국내학위논문 및 해외취득 학위논문 정치·경제·사회 통계자료 국방학술정보	10,396,020
문 화	국보, 보물 등 문화재 정보 전국박물관 정보 공연기록물, 공연대본, 악보 등 공연예술 정보 미술 작품 및 작가정보 등	5,998,786
역 사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사료총서 등 고도서 고전국역총서(고려사절요, 성호사설 등) 및 한국문 집총간 궁중문화 역사자료, 항일운동 관련 자료 등	30,304,980
기타	정보통신 관련 산업통계 및 정책동향 건설교통기술 관련 국내 공공기관 발간 연구보고 서, 기술정보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 등 연구보고서 종합법령정보, 법령해석, 행정심판정보 등	9,237,517
총 계		143,529,861

출처: www.knowledge.go.kr

<표 3> 유형별 지식정보현황

구 분	주요내용	상세내역
고문헌	고도서	고전국역, 사서삼경, 경학, 남명학, 족보 자료 등
	고지도	대동여지도, 군현지도, 여지도 등 조선시대 지도
	행정자료	호적, 소송문서, 관보, 재산상속, 계약문서, 관직임명장, 노비문서, 궁중 및 왕실 자료 등
	해외 자료	한국관련 서양고서, 독립운동 관련 외국어 자료 등

구분	주요내용	상세내역
문화유산	인물	독립운동가, 전근대인물, 여성활동가, 공훈록 등
	유물·유적	국보, 보물, 유형문화재, 민속유물, 명승지 자료 등
문화예술	생활	민속, 복식, 음식, 신앙, 공예기술 등
	문화재	무형문화재, 문양 자료 등
	영상	국내 영화필름, 시나리오, 국가기록영상 등
보고서	관광	제주, 강원, 경북 지역 레저관광 정보 등
	연구보고서	과학, IT, 국방 등 연구 및 기술자료 등
	통계자료	국내 통계연보, 연감, 조사자료 등
논문	간행물	정부 및 공공기관 간행물, 정책자료,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정부발간 교과서 등
	학위논문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생태환경	학술논문	국내 학회·협회 등에서 생산되는 학술지
	생물자원	화석·식물·곤충·조류 등 표본자료, 생태보전지역, 국가자연사 자료 등
	BT	유전체, 단백질체, 농축산 바이오 자료 등
	해양	해양 관련 기상, 어군, 지질, 영상자료 등
	지질자원	국내 지질분포, 광산, 광물 자료 등
	천문우주	천문현상·현황, 천체 이미지 자료 등
기타	GIS	1960년부터 촬영된 국내 항공사진, 산림사진 등
	언어·음성	한국어 및 다국어 언어대역, 음성인식 자료 등
	법률	1910~48년도 근대법령 자료
	북한	북한 행정체계, 지역개관, 자연·인문지리 자료 등

출처: www.knowledge.go.kr

국가지식포털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나 민간 기업 등이 원하는 공공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 기관과 일일이 접촉하거나 소재 파악 곤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에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로 『공공정보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공개 가능한 공공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목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주요 정보(정보명, 주요 내용, 서비스 URL 등) 및 보유기관 정보(보유기관, 담당부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들로 부터 정보가 제공된 이유로 제공 정보의 항목들이 약간

씩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공공정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¹⁾

<표 4> 분야별·제공기관별 공공정보 수

분야	공공정보 수	기관	공공정보 수
공공질서및안전	4	행정부	139
과학기술	38	입법부	6
교육	22	사법부	6
농림해양수산	42	지방자치단체	63
문화체육관광	76	정부행정위원회	4
보건	9	공공기관	133
사회복지	13	계	351
산업, 중소기업	47		
수송 및 교통	15		
일반공공행정	39		
지역개발	9		
통신	9		
통일, 외교	15		
환경보호	13		
계	351		

출처: www.knowledge.go.kr (2010.11.25 검색)

나.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www.pisc.or.kr)는 『공공정보 제공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2010. 7. 7)』의 “제7조(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정

31) www.knowledge.go.kr (2010.11.25 검색).

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를 근거로 2010년 6월 10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민간에서 수집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상담,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개인·기업·단체 등 민간부문과, 공공정보를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3>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민원인이 공공정보를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센터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신청내용을 전달하고, 협의를 거쳐 정보제공여부와 정보제공방식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만일 공공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절한다고 해도 지원센터에서 정보제공을 권유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그림 14〉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지원절차



출처: www.pisc.or.kr (2010.11.25 검색)

다.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지원센터(SMAC: Smart Mobile Application Center, www.smac.or.kr)는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이동사(KT, SKT, LGT), 포탈사(네이버, 다음), 앱센터지원본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국내 민·관·연의 총 13개 무선인터넷 관련 핵심 사업자·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앱 개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만든 앱 개발 지원 체계이다.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전용 앱 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바일 웹 기반의 앱 개발도 종합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Open API, S/W 모듈, 기술 및 정책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며, 오프라인 상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테스트 베드 및 회의공간을 제공 하고 있다.³²⁾

특히, 공공기관이 OPEN API³³⁾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정보 목록과

32) www.smac.or.kr (2010.11.26 검색).

33) API: 응용 프로그램이 컴퓨터 운영 체제(OS)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등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API라는 약어로 부른다. 실제로는 OS 등의 기능과 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의한 함수의 집합을 말한다. 응용 프로그램은 API를 사용하여 OS 등이 가지고 있는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발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그림 15>.

<그림 15> SMAC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 API 목록

국내 API		Home > Open API > 국내 API
제공기관	Open API 세부 사항	
 서울특별시 (서울시 GIS 지도 정보)	소개	서울시GIS의 지도 데이터는 측량성과물로 Open API를 이용하여 국내 지도서비스 사이트에서 매쉬업 활용
	관련 URL	· 이용약관 : http://gis.seoul.go.kr/Guide/Flex_map.jsp · 클래스 참조 : http://gis.seoul.go.kr/Guide/Flex_class.jsp · 튜토리얼 : http://gis.seoul.go.kr/Guide/Flex_tutorial.jsp · Open API 예제 : http://gis.seoul.go.kr/Guide/Flex_summary.jsp
 행정안전부 (지식포털/대표포털)	소개 (지식포털)	지식사업으로 구축된 양질의 지식정보와 1,000여개 국가지식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구축된 국가지식을 대상으로 서비스중인 국가지식포털 검색서비스를 개인 또는 기관에서 Open API를 이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관련 URL (지식포털)	· 검색 Open API : https://www.knowledge.go.kr/jsp/intro/intro_openapi_01.jsp
	소개 (대표포털)	국가대표포털에서는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결과를 OpenAPI를 통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관련 URL (대표포털)	· Open API 신청 및 안내 : http://www.korea.go.kr/service/openAPI.do?kind_api=1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정보)	소개	도메인에 대한 Whois 정보 제공
	관련 URL	· Whois Open API : http://whois.kisa.or.kr/ ※ 화면 왼쪽 중간 배너로 이동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검색)	소개	나라기록 검색서비스에서는 국가기록물에 대해 공개 활용 활성화 등 IT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웹서비스 대신 개방형, 경량화 연계 지원으로 국민과 기업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 제공
	관련 URL	· Open API 활용 : http://search.archives.go.kr/ArchivesHelp06.htm · Open API 토큰값 : http://search.archives.go.kr/ArchivesHelp12.htm · 웹 서비스 활용 : http://search.archives.go.kr/ArchivesHelp13.htm
NDSL 플랫폼을 통해 제공해 온 KSIII 정보서비스를 여러분의 웹 사이트로 쉽게 연		

출처: www.smac.or.kr (2010.11.29 검색).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용어사전(terms.naver.com, 2010.11.29 검색).
 OPEN API: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제공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지도 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용어사전(terms.naver.com, 2010.11.29 검색).

3. 공공정보 제공현황과 활용사례

가.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정보 제공현황

2010년 6월 부터 2010년 11월 현재까지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개발자에게 제공된 공공정보는 <표 5>와 같다.

<표 5>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개발자에게 제공된 공공정보

	요청 DB 명	보유기관	비고
1	국립수목원 DB	국립수목원	담당자 연결
2	공공정보 DB 목록	한국정보화진흥원	PDF파일
3	국가지식포털	한국정보화진흥원	Open API
4	OK 주민서비스	행정안전부	Open API
5	관광명소 DB	한국관광공사	샘플 DB 제공
6	라이프스타일DB	(주)케이웨더	샘플 DB 제공
7	공간정보	경기도식품안전과, 산림과	샘플 DB 제공
8	경기도 관광정보DB	경기관광공사	샘플 DB 제공
9	법령/법률용어 DB	법제처, 로앤비	기관에 제공 신청
10	지리정보	경기도 지리정보	샘플 DB 제공
11	Daum 지도	Daum	샘플 DB 제공
12	대기오염정보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공개정보 과거대기정보
13	국가생물자원 통합DB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공개정보
14	해양관측정보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공개정보 과거DB PDF파일제공
15	외래동식물정보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16	해/달 출몰시각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17	생필품 가격 정보	소비자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18	교육관련 DB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19	공영주차장 위치정보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정보
20	119 구조대 위치	서울종합방재센터	홈페이지 공개정보

	요청 DB 명	보유기관	비고
21	증상별 정보	코리아메디케어	홈페이지 공개정보
22	부산 주거지 주차장 정보	부산시	홈페이지 공개정보
23	게임산업	한국컨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24	한식 정보	농수산물유통센터	홈페이지 공개정보
25	국내 숙박지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연결
26	여행정보 추천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연결
27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담당자 연결
28	인체정보 D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담당자 연결
29	병원/약국 DB	코리아메디케어	담당자 연결
30	건강상담,베스트닥터 DB	코리아메디케어	담당자 연결
31	택시운행정보	경기도	샘플 DB 제공
32	국가소음진동통합DB	환경관리공단	샘플 DB 제공
33	상하수도 종합정보DB	환경관리공단	샘플 DB 제공
34	지하철 운행계획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엑셀 파일 다운로드
35	기차 시간표	코레일	엑셀 파일 다운로드
36	경기도 장애인복지 시설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파일제공
37	자원봉사모집 정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파일제공
38	노인일자리 DB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연결
39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연결
40	국어사전 DB	국립국어원	데이터 제공(유료)
41	농촌체험마을 DB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연결
42	농촌체험마을 DB	경기도청	웹 파싱
43	행정표준코드관리	행정안전부	기관에 제공 신청
44	행정표준용어 DB	행정안전부	엑셀 파일
45	새주소DB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공개정보
46	도서관 정보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정보
47	종합수의과학지식정보 DB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파싱 및 다운로드
48	제주 민속문화 DB	제주시	담당자 연결
49	주민센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정보
50	서울시 위치정보	서울시	Open API

	요청 DB 명	보유기관	비고
51	경기도 일자리 정보	경기도	XML
52	수유실 DB	각 구청	홈페이지 공개정보
53	어린이활동공간중의 유해물질정보	한국환경산업개발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54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연결
55	안동음식 DB	안동시청 식품산업과	홈페이지 공개정보
56	식품안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청	웹 파싱
57	세계도시 DB	국토연구원	웹 파싱
58	무지개 세상의 영상정보	무지개세상	홈페이지 공개정보
59	예술정보 DB	예술의 전당	HTML
60	조선왕조실록 DB	국사편찬위원회	웹페이지 형태 사용
61	서울대공원 동물 및 시설정보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62	해외안전정보	외교통상부	담당자 연결
63	서울관광정보 DB	서울특별시	웹 파싱
64	사이버 공룡 테마파크	경남 고성군	웹 파싱
65	문화재 DB	문화재청	텍스트 제공
66	역사정보 통합 DB	국사편찬위원회	국가지식포털 Open API 활용
67	장서각 소장 인물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지식포털 Open API 활용
68	개인서비스업소 정보	창원시	홈페이지 공개정보
69	국가기록영상	한국정책방송원	국가지식포털 Open API 활용
7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국가지식포털 Open API 활용
71	농식품 안전 품질통합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 연결

출처: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반면, 공공정보 제공요청이 거절된 경우도 많이 있다. 정보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정보공개 방식을 변경 중이거나 향후 정보 제공 예정인 경우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서버보안문제로 제공을 거절한 경우, 정보가 전산화 되지 않은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인 경우 등이 있다.

<표 6>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개발자에게 제공되지 못한 공공정보

	요청 DB 명	미제공 이유	보유기관
1	경기도 버스정보	13종 구축사업으로 2010년 12월 Open API 형태로 제공 예정	경기도
2	나라장터 구매자료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이며 2011년 공개 예정	나라장터
3	서울시 버스정보	2010년 12월 OpenAPI 형태로 제공 예정	서울시
4	인천시 버스정보	2011년 사업 추진 계획	인천시
5	조석정보	2010년 9월 중 RSS 및 XML 형태로 정보 제공 예정	국립해양조사원
6	국가통계통합 DB	2011년 통계목록을 OpenAPI 형태로 제공 예정	통계청
7	수도권대중교통정보 시스템	2010년 10월 중 서비스 예정	교통관리공단
8	전자해도 수심정보	2010년 9월 중 RSS 및 XML 형태로 정보 제공 예정	국립해양조사원
9	유가정보	자체개발 및 사후관리 염려	오피넷
10	지하철실시간운행정보	보안문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11	실시간 기차 시간표	보안문제, 시스템 과부하	코레일
12	날씨	기상산업진흥법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3	울산광역시	일반인에게 불가	울산광역시
14	토지이용계획DB	과거에 문제 발생	국토해양부
15	등기부등본DB	서버 보안문제, 영리목적 사용불가	대법원
16	예방접종 도우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질병관리본부
17	사건/사고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18	아가사랑 홈페이지DB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 우려	인구보건복지협회
19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서버 보안문제	대법원
20	수배차량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21	다산콜센터 민원상담/신고DB	사업중복,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다산콜센터
22	지하철 최단거리	민간기업	네이버
23	도난/대포차량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24	법원경매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서버 과부하	대법원
25	영화관 위치	민간기업	.
26	놀이시설 위치	민간기업	.

	요청 DB 명	미제공 이유	보유기관
27	축제/행사 정보	특성상 잦은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한국관광공사
28	일모아	공공정보제공지침 11조 근거	한국고용정보원
29	부산해양항만청 AIS 서버	보안문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30	범죄수사기록	개인정보 및 보안문제	경찰청
31	수사자료통합시스템	내부망	경찰청
32	CCTV 위치정보	범죄악용 우려 및 각 구역 별도 관리	각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33	성범죄자 위치좌표	별도 가공 DB 제공 없음. 법 개선 필요	여성가족부
34	워크넷	SLM형태 지원정보 없음	한국고용정보원
35	전화번호 DB	통합 관리 기관 없음	.
36	서초구 책사랑방 DB	현재 자체 개발 중	서초구
37	스팸민원 DB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수사기관에만 제공	KISA
38	수유실 DB	정확한 DB 없음	인구보건복지협회
39	부동산 공시지가DB	일반인에게 불가, 일부 지자체는 자체 개발 중	국토해양부
40	아파트 실거래가DB	일반인에게 불가, 일부 지자체는 자체 개발 중	국토해양부
41	광주전남관광문화정보	자체개발(유토피아 구축 사업)	전라남도
42	식품류 바코드 및 제품 정보	회원 중심 서비스라 일반에게 공개 불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센터
43	독성정보 DB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자칫 내용전달이 잘못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출처: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이 중에서 경찰과 관련 있는 정보요청도 있다. 범죄 관련정보, 미아관련정보, 범죄우발지역, 주요 순찰로, 범죄 수사기록·통계, cctv 위치정보, 안전지역 구분도, 사건·사고 데이터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공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찰에 요청된 정보와 정보제공불가 이유

	요청 DB 명	미제공 이유	보유기관
17	사건/사고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20	수배차량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23	도난/대포차량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30	범죄수사기록	개인정보 및 보안문제	경찰청
31	수사자료통합시스템	내부망	경찰청
32	CCTV 위치정보	범죄악용 우려 및 각 구역 별도 관리	각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출처: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나. 민간에서 개발한 서울시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례

<그림 16>과 <그림 17>은 민간에서 개발한 서울시 관련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사례이다. 서울시 공공정보를 이용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같은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보다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공공정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개발실적을 쌓아 이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앱 공모전에서 입상하면 창업이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앱 개발에 뛰어 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 16> 민간이 개발한 서울시 관련 아이폰 어플리케이션(1)



출처: 서울시, “스마트폰 기반 전자정부 추진 전략 세미나:Gov 2.0시대의 서울시 모바일 전자정부 발전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8면.

<그림 17> 민간이 개발한 서울시 관련 아이폰 어플리케이션(2)



출처: 서울시, “스마트폰 기반 전자정부 추진 전략 세미나:Gov 2.0시대의 서울시 모바일 전자정부 발전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9면.

4. 스마트폰 앱 공모전 사례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다양한 스마트폰 앱 공모전이 있었으며,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 공모전 중 주요 공모전 사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가. 대한민국 앱 경진대회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경기도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은 1억 1천만원 상금이 걸린 정부 주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원활한 민간 개방을 유도하고, 민간 DB사업자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³⁴⁾ 2010년 6월 14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개발부분과 기획부분을 포함하여 총 41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4건이 입상하였다.³⁵⁾ <표 8>은 개발부분, <표 9>는 기획부분 수상작 목록이다.

<표 8> 대한민국 앱 경진대회 개발부분 수상작 목록

구분	앱명칭	활용DB	DB 보유기관	작품소개
대상 (3)	전통향도음식	한국의 전통향도 음식	농촌진흥청 한식세계화 연구단	대한민국 지역별 전통향도음식, 조리법 안내 주변 식재료를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한식 요리법 검색 제공
	인빌체험	정보화마을	행정안전부	전국 농촌체험 프로그램정보 제공 앱

34) 이 공모전은 반드시 DB를 이용해서 개발·기획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공모전 홈페이지에는 282개의 공공·민간 DB를 제공하였다.

35) “개발부분 수상작은 DB를 제공한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기획부분 수상작의 경우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획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부·행안부·경기도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0.10.29.

구분	앱명칭	활용DB	DB 보유기관	작품소개
				지역별 테마 형식으로 정보 제공
	fifteen life	공공임대자전거 fifteen park 위치 정보 DB	(주)에코바이크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행중인 공공임대자전거 Fifteen 정보 제공 앱 임대자전거 위치정보 및 가용자전거수 정보 제공
최우수상 (2)	바다낚시	국가생물자원통합DB 실시간 해양관측정보 동네예보서비스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바다낚시 포인트 및 주변 지역 정보, 해당 지역 날씨 정보 및 어종정보 제공
	Home Doctor (Smile Doctor)	건강상담 자가진단 병원DB 의약품Q&A 적응증별 의약품별 상호작용 약품 profile DB	코리아 메디케어 비트컴퓨터	자가진단 기능 및 약품 정보 제공 앱 약품 사용법 및 부작용 정보 제공
우수상 (2)	농수산물 가격정보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정보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별 농수산물 가격 정보 제공 앱 지역별로 가격정보 검색 가능하며 친환경농산물 가격정보 등의 정보 제공
	Enjoy Bike	국가대기오염정보 날씨 open API 구글 지리정보 API 자전거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명소가는길 게시판DB	환경부 야후 구글	경기도 지역 내 자전거 도로, 보관소, 대여소 정보 제공 앱 지역별, 테마별 정보 제공
장려상 (7)	위험알리미	2009 범죄통계 성범죄자 알림e CCTV배치도 유동인구 일만지점 정보 주민등록인구통계분 석자료 서울시 재산세 징수 지자체 성매매 방지 정책 시범평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방범관제센터 서울시청 여성가족부	사용자 위치 기준으로 주변 발생한 5대 범죄, 주변 CCTV, 가로등, 경찰서 위치 제공 앱 일정 수식을 이용한 위험도 산출
	콜택시	택시 운행정보 지도 API 거기 API	동부NTS 네이버 야후	사용자 주변 빈 택시 및 택시 정보 제공 앱
	스마트택시	택시 운행정보 지도 API	동부NTS 네이버	택시 콜 서비스 및 예상 택시 요금 자동 계산 등의 서비스 제

구분	앱명칭	활용DB	DB 보유기관	작품소개
			야후	공 앱 시간 설정 시 정해진 시간에 자동 배차 신청 기능
	수유실찾기	유아 수유실 정보 DB	여성가족부 서울메트로 서울시철도공사 코레일 경기도 기타단체	기존 유사 앱과 달리 현재 본인 위치에서 일정 거리 내의 수유실 검색 및 정보 제공
	careerup	JK-app_data_list.asp	잡코리아	자격증과 공모전, 취업정보를 스키텔러 방식으로 제공하는 앱
	경기도여행이야기	경기도 관광정보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여행정보에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한 여행정보를 통합한 SNS 기능의 앱
	경기도 여행잡지	경기도 관광정보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문화시설, 자연관광, 체험관광, 테마관광, 숙박시설 정보 제공 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이 중에서 개발부문 장려상인 ‘안전알리미’는 사용자 위치 기준으로 주변 발생한 5대 범죄, 주변 CCTV, 가로등, 경찰서 위치 제공하며, 일정 수식을 이용한 위험도를 산출하는 앱으로, 치안관련 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앱은 경찰청에서 제공한 정보가 아닌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방범관제센터, 서울시청의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표 9> 대한민국 앱 경진대회 기획부문 수상작 목록

구분	앱명칭	활용DB	DB 보유기관	작품소개
대상 (1)	타임머신	국가기록영상 역사정보통합DB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건설산업 청사진DB	한국정책방송원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토해양부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현 주소와 과거주소를 매칭, 현재의 위치에 대한 과거의 영상(길거리, 건물 등)을 구현
최우수상 (2)	Im Your Avatar	장애우등록DB	한국장애인협회	실시간 LBS 기능을 활용하여 장애우의 도움 요청시 주변 사람이 요청을 받아 도움을 줄 수 있는 앱
	우리동네상황실	전국주소API 기관소개, 행정구역	우정사업본부 경기도	민원사항을 손쉽게 제보하고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생활

구분	앱명칭	활용DB	DB 보유기관	작품소개
		지도API	네이버	민원처리 서비스 앱
우수상 (3)	꼬마농부	농업경영정보 주말농장정보 식물도감 어린이생물교실 농촌체험관광정보 동네예보서비스	농림부 경기도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경기도 기상청	아이들 대상으로 채소를 올바르게 키울수 있는 방법을 제공
	그린맘	독성정보DB	식약청	상품의 유해가능 화학성분 검색 및 타제품과 비교기능 제공
	운전면허도우미	학과시험문제은행DB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학과시험, 코스시험, 도로주행 시험의 전 과정을 실제시험과 같 이 동일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구 성
장려상 (4)	우리들의 얼	한국독립운동정보	독립기념관	역사정보를 이용, 기능성게임으로 제작하여 우리역사 바로알기에 기 여
	한국문양 (K.pattern Tryout)	문양원형DB	한국문화정보 센터	사용자가 원하는 문양 이미지를 검색 및 검색된 문양원본을 바탕 으로 색상/질감/활용 등을 시도해 보고 그 결과를 저장
	마운테니아	공간정보(등산로도) 동네예보서비스	경기도 기상청	등산지 검색, 현위치 탐색, 등산 장소의 날씨정보, SNS 기능 제공
	FLYAWAY	관광명소DB	한국관광공사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독창적 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유저의 현재 감정에 맞는 추천 여행지를 제공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나. 기상청 날씨정보 모바일 앱 공모전

기상청에서 개최한 ‘기상청 날씨정보 모바일 앱 공모전’은 DB 기반의 유비쿼터스 기상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며, 모바일 기반의 날씨 콘텐츠 이용자변 확대와 1인 창업 개발인력 지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7월 12일 부터 9월 30일까지 1천만원의 상금을 걸고 공모하였다. 개인·팀 모두 135명이 참가하여 20개의 앱이 출품되었고 이 중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되었다.

이 공모전에서 사용하는 날씨정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였으며, XML 과 CSV 형식으로 제공하여 개발자가 원활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표 10>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정보

종류	파일형식	정보 설명
동네예보	X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단위의 동네별 날씨 예보 ● 날씨, 강수확률, 강수량, 최저/최고기온, 기온, 풍향/풍속, 습도 정보 제공 ● 각지점별 코드는 공모전 신청시 별도 제공.
주간예보	X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단위의 광역별 날씨예보와 최고/최저 기온정보를 모레 부터 총 6일간의 날씨 예보 제공. ● 각지점별 코드는 공모전 신청시 별도 제공.
현재날씨	X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점별(지역별) 1시간 단위의 현재날씨. ● 날씨, 기온, 강수량의 정보를 제공 ● 각지점별 코드는 공모전 신청시 별도 제공.
응용 기상지수	CS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기상지수 ● 식중독, 부패, 체감온도, 동상가능, 열지수, 불쾌지수, 자외선, 동파가능, 산불위험, 황사영향 ● 보건기상지수 ● 천식가능, 뇌졸중가능, 꽃가루농도위험(수목류, 소나무류, 잡초류)

출처: <http://web.kma.go.kr>

다. 경기도 부천시 앱 공모전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상금 2천800만원을 걸고 ‘제1회 부천시 앱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³⁶⁾ 이 공모전에서는 부천시가 보유한 공공정보 중 1개 이상을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거나 기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천시가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교통분야(공영주차장 공석 안내, 버스정보, 교통 흐름 정보)와 문화정보(부천시 문화행사 관련 일정)로 다른 공모전에 비해 공공정보를 이

36)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공모전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공모전에 대한 소개만 한다.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제공한 것이 눈에 띈다.

라. 부산 모바일 앱 공모전

부산시에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부산 모바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총 상금 4천500만원과 부상을 내 걸고 앱 개발부분과 앱 기획부분으로 나눠 공모하고 있다. 공공정보 DB와 민간정보 DB, 부산시 공공정보 DB를 이용하여 개발·기획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산시 공공정보에는 해운대 문화관광정보(축제), 관광정보(관광명소, 음식점, 축제), 부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정보(고시공고, 공지사항 등)가 있다.

마. 한국무선인터넷사업연합회의 공공정보활용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한국무선인터넷사업연합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공공정보활용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동통신 3사가 후원하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생성한 공공정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과제를 선발하여 개인개발자 과제 45건에 각각 1천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과제 30건에 각각 2천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제2절 외국의 공공정보 개방 사례

1. 미국

가. 미국 공공정보포털(data.gov)

미국은 1996년 ‘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여 민간이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2009년 5월 공공정보포털(www.data.gov)를 구축하여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ata.gov에서는 공공정보를 Raw Data, Tool, Geo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data.gov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가 평가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datagov.ideascale.com에서는 data.gov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받고 있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³⁷⁾

<표 11> 미국 data.gov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 분류체계

연번	공공정보 분류체계
1	Agriculture
2	Arts, Recreation, and Travel
3	Banking, Finance, and Insurance
4	Births, Deaths, Marriages, and Divorces
5	Business Enterprise
6	Construction and Housing
7	Education
8	Elections
9	Energy and Utilities
10	Federal Government Finances and Employment

연번	공공정보 분류체계
11	Foreign Commerce and Aid
12	Geography and Environment
13	Health and Nutrition
14	Income, Expenditures, Poverty, and Wealth
1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16	International Statistics
17	Labor Force, Employment, and Earnings
18	Law Enforcement, Courts, and Prisons
19	National Security and Veterans Affairs
20	Natural Resources
21	Other
22	Population
23	Prices
24	Science and Technology
25	Social Insurance and Human Services
26	State and Local Government Finances and Employment
27	Transportation
28	Wholesale and Retail Trade

출처: www.data.gov , 2010.11.10 검색.

37) 남영준,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Workshop: 해외 공공정보 개방사례와 시사점, 제안”,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국가DB포럼, 2010. 50-51면 참조.

<그림 18> 미국 공공정보제공포털 www.data.gov



나. 항공교통분야 공공정보 사례(FlyOnTime.us)

FlyOnTime.us에서는 날씨에 따른 비행기의 연착률을 검색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9>를 보면,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여 보스턴 BOS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연착률을 기상상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늦어질 지 예상할 수 있게 된다. FlyOnTime.us에서는 개발자들이 이 정보를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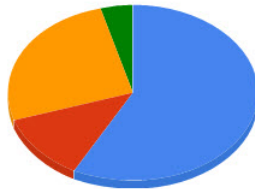
있다.

<그림 19> FlyOnTime.us의 항공기 연착률 정보

**New York, NY: Kennedy International (JFK)
to Boston, MA: Logan International (BOS)**

Flight Delay Summary

Based on 8521 flights from 05/01/2008 to 05/31/2009



58% **On Time**
12% **5-20 min. Delay**
26% **>20 min. Delay**
4% **Cancelled/Diverted**

	Average <small>(median)</small>	Be Prepared For <small>(85th percentile)</small>	Cancelled <small>or diverted</small>
In Good Weather...	7 min. early	25 min. late	1%
In Bad Weather...	8 min. late	77 min. late	8%
In Fog... (7%)	19 min. late	94 min. late	12%
In Rain... (40%)	8 min. late	77 min. late	8%
In Snow... (7%)	14 min. late	96 min. late	15%
In Thunder... (10%)	13 min. late	107 min. late	14%

"Be Prepared For" gives the longest delay you can reasonably expect to occur. Only the unluckiest 15 percent of flights experience longer del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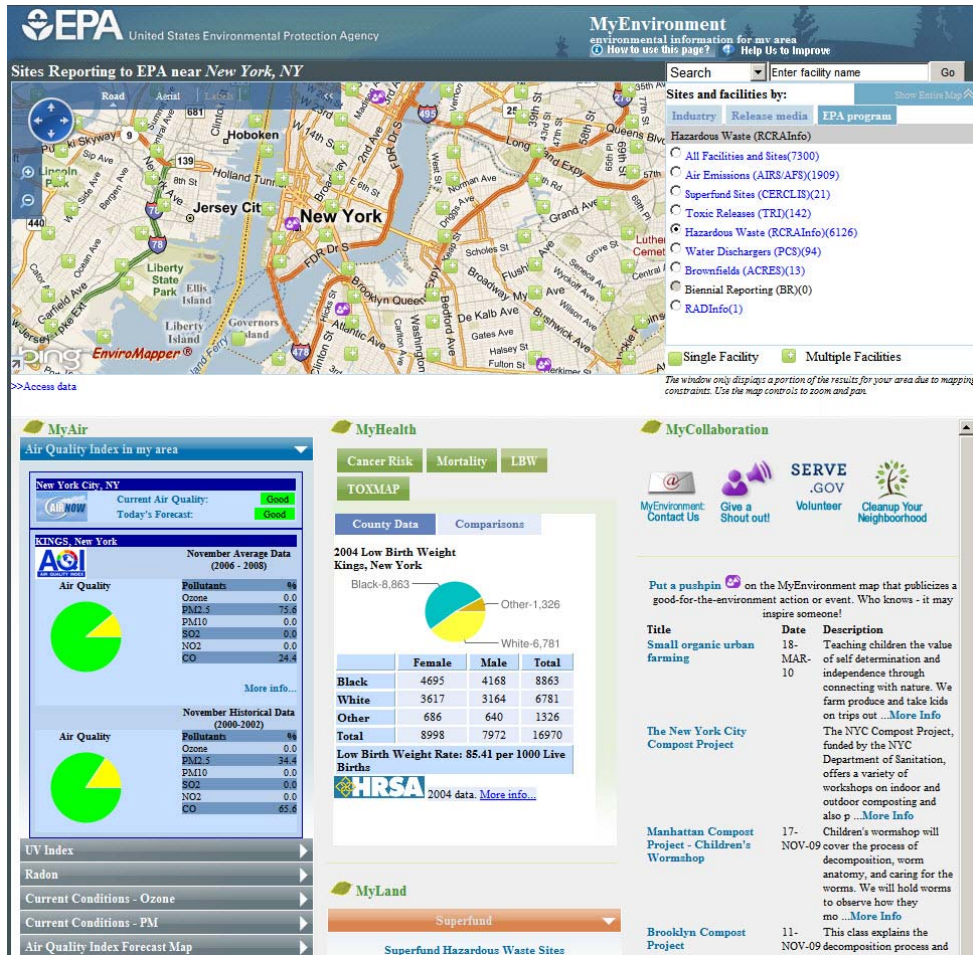
Current weather is 41.0 F (5.0 C) and Overcast, 36% humidity, and 10.00 miles visibility at [NEW YORK J F KENNEDY INTL AR, US, NY](#) as of Thu, 25 Nov 2010 08:51:00 -0500.

다. 환경분야 공공정보 사례(www.epa.gov/myenvironment)

MyEnvironment(www.epa.gov/myenvironment)는 환경보호국(EPA)에서 운영하는 환경정보 제공 사이트이다.

사용자가 검색한 지역의 EPA 기관들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MyAir 영역에서는 해당지역의 각종 대기관련 정보를 보여주고, MyHealth 영역에서는 지역별 암위험률, 사망률, 저체중출생아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 MyEnvironment의 지역환경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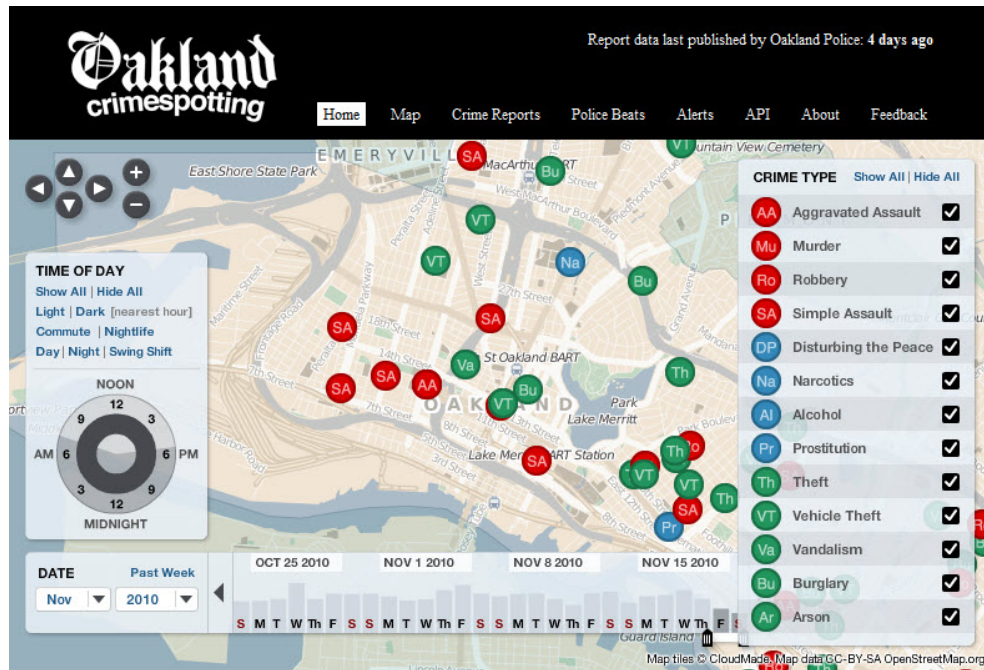


라. 치안분야 공공정보 사례(crimespotting.org)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서는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oakland.crimespotting.org와 sanfrancisco.crimespotting.org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범죄유형별 아이콘으로 지도상에 발생 위치를 표시하고, 시간대별 범죄발생정보 및 날짜별 범죄발생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개발자의 정보이용을 위한 기술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시 범죄정보(oakland.crimespotting.org)



마. 뉴욕시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 NYC BigApps³⁸⁾

2009년 10월, 뉴욕시가 개최한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인 ‘NYC 빅앱스(BigApps)’에서는 100여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출품됐고, 상금 5천 달러의 1등상을 포함해 총 13개 부분에 2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에 출품된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뉴욕시가 제공하는 공공정보 공개 센터인 ‘NYC.gov Data Mine’의 데이터베이스를 적어도 한 개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38) 주민영, “모바일 환경에 대처하는 뉴욕시와 서울시의 다른 자세”, <http://www.bloter.net/archives/25140> (2010.11.30 검색).

뉴욕시는 경진대회를 열기에 앞서 30개의 시 기관에서 보유중인 170개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는 교통상황 정보, 시내 행사 정보, 부동산 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식당 위생점검 결과, 학교나 선거구 등에 대한 지도정보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됐다.

뉴욕시는 ‘NYC 빅앱스’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정보 공개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뉴욕시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시도 개발자들이 공공정보에 더욱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림 22> 뉴욕시의 두 번째 앱 경진대회 BigApps2.0



NYC BigApps 2.0

- How to enter
- Important dates
- Judges
- Judging criteria
- Prizes

About NYC BigApps 2.0

For the second year, the City of New York is improving the way it provides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to citizens. But delivering great information requires great tools. The NYC BigApps Competition will reward the developers of the most creative, best implemented, and impactful applications for delivering information from the City of New York's NYC.gov Data Mine to interested users. Software developers will compete for \$20,000 in cash, wide exposure for their work, and a meeting with the Mayor. Submissions may be any kind of software application, be it for the web, a personal computer, a mobile handheld device, SMS, or any software platform broadly available to the public.

Latest Blog Post

Mayor Bloomberg Launches NYC BigApps 2.0 Competition
by Libby Langsdorf, about 1 month ago

Recent Supporters

2. 영국

영국은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2005년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을 제정하였다. PIO(Power of Information) Task Force Team에서는 공공정보포털 data.gov.uk를 2010년 1월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11월 현재 4,600건이 넘는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data.gov.uk는 데이터 평가, 데이터 요청, 블로그, Wiki, Forum, 애플리케이션 등록 및 포상제를 통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³⁹⁾

<그림 23> 영국 공공정보포털(data.gov.uk)

data.gov.uk^{BETA}
Opening up government

What are you looking for?

Home Data Apps Ideas Forum Wiki Blogs Linked Data Resources About

Download a free app that helps you plan your cycle journey home

Over 4,600 datasets to view

Inside Government Data

Who's who in Government and where does the money go? Follow these links to find the data that opens it all up.

- Government spend over £25,000, by department
- Who does what in Whitehall - and how much are they paid?
- Hospitality, gifts and expenses

Share this

Facts, figures, apps and more

Data
Looking for something specific, or just want to know more about how Government spends your money? You'll find 4,600 datasets to help you get answers.

Apps
Want your phone to wake you when you get to your train station? Discover over 100 apps harnessing public data to make your life easier.

Tags
Can't decide where to start? You can browse the data by clicking on popular topics. Try one of the tags here to find what you're most interested in.

- health (1,624)
- health-and-social-care (998)
- care (930)
- population (826)
- health-well-being-and-care (746)
- transparency (682)
- child (642)
- children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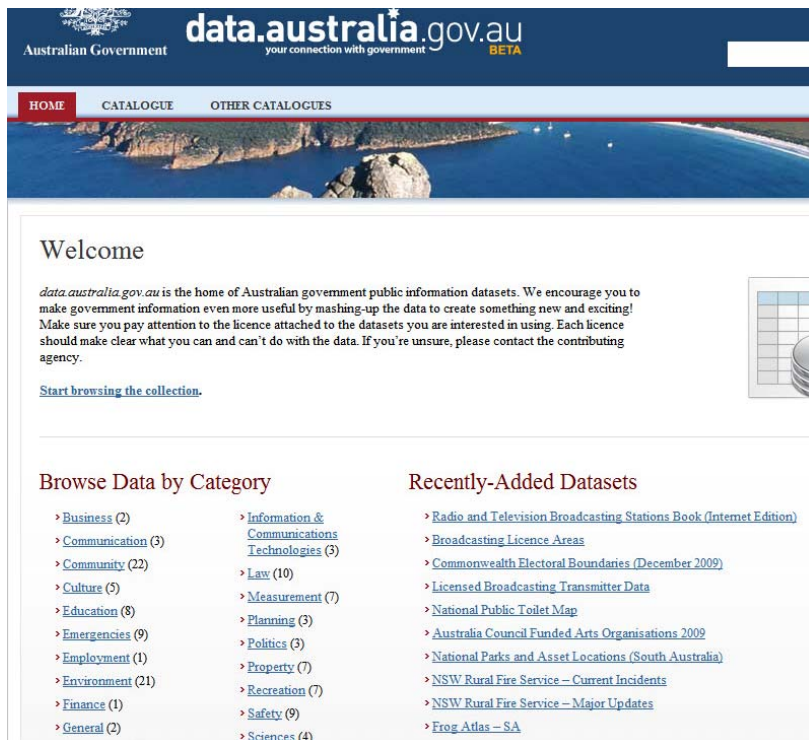
39) 남영준, 위의 글 55-56면 참조.

3. 호주

호주는 영국의 Power of Information Task Force를 참조, Government 2.0 Task Force 활동을 시작하여 2009년 12월 정부의 정보개방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⁴⁰⁾

호주는 2009년 9월 공공정보포털 data.australia.gov.au를 개설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0년 11월 25일 현재 data.australia.gov.au에는 27개 분야에서 불과 208개 공공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도 몇 년 전 정보가 많다.

<그림 24> 호주 공공정보포털(data.australia.gov.au)



40) 남영준, 위의 글 59면 참조.

이 밖에 data.australia.gov.au는 <표 12>처럼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2> 호주 공공정보포털의 공공기관 연계서비스 목록

주제	내용	제공기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통계	www.abs.gov.au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	www.aihw.gov.au/dataonline.cfm
Australi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	사회과학데이터기록	www.assda.edu.au
Australian Spatial Data Directory (ASDD)	공간정보	asdd.ga.gov.au/asdd/tech/zap/advanced.html
Geoscience Australia	지리지형정보	www.ga.gov.au
Environmental Resources Information Network	환경	www.environment.gov.au/erin
Landgate (WA) - Shared Land Information Platform (SLIP)	부동산	www2.landgate.wa.gov.au/slip/portal/services/datasets-available.html

출처: data.australia.gov.au, 2010.11.23 검색.

제4장 모바일 경찰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1절 모바일에서 유용한 경찰의 공공정보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사이버경찰청, 사이버 112, 사이버 범죄, 운전면허, 교통정보, 실종자 찾기,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부 서비스는 현재 모바일 웹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⁴¹⁾ 경찰이 현재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모바일에서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경찰 공공정보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공개수배자 정보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과학수사센터(www.kpsi.go.kr) 홈페이지에서는 <그림 25>와 같이 중요지명피의자 20명에 대한 수배목록을 볼 수 있다. 공개수배자를 보다 빨리 검거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개수배자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야 한다. 매스컴을 통한 공개수배로 피의자가 신속하게 검거된 사례는 많이 있다.⁴²⁾

41) 2010년 11월 현재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찰 모바일 서비스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바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경찰서 찾기, 실시간 교통정보, 경찰청 블로그·트위터 연결, 경찰청·지방청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182 실종아동찾기 모바일 홈페이지 연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모바일용 교통정보(m.utis.go.kr) 웹사이트와 경찰청 라디오 '폴인러브'를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42) 2010년 11월28일 오후 6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모텔에서 초등학교 3학년 A(10)군을 성폭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여OO(40)가 공개수사 10시간 만에 시민제보로 경기도 안양에서 검거됐다. 피의자 여OO에 대한 사진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퍼지면서 국민들이 피

<그림 25> 사이버경찰청의 공개수배자 목록

Home > 국민마당 > 공개수배자 조회/제보

공개수배자 조회/제보

수배자 검거에 결정적인 재보를 하신 분께는 신고보상금을 드립니다.

- 대상: 중요 지명 피의자 20명
- 공개수배 및 현상금 유효기간: 2010년 7월~ 2010년 12월
- 신고처: **국번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개수배자의 사진 및 개인정보를 삭제·변경·유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배목록 전체 리스트
목록 외 수배자 제보하기

			
이름: 장 ○ (35세) 기간: 2010/7~2010/12 관서: 경찰청 죄명: 살인	이름: 최 ○ (46세) 기간: 2010/7~2010/12 관서: 경찰청 죄명: 살인	이름: 손 ○ (51세) 기간: 2010/7~2010/12 관서: 경찰청 죄명: 살인	이름: 임 ○ (44세) 기간: 2010/7~2010/12 관서: 경찰청 죄명: 살인
			
이름: 박 ○ (49세) 기간: 2010/7~2010/12 관서: 경찰청 죄명: 강도살인	이름: ○ ○ (36세) 기간: 2010/7~2010/12 관서: 경찰청 죄명: 인질강도	이름: 김 ○ (27세) 기간: 2010/7~2010/12 관서: 경찰청 죄명: 성폭력특별법	이름: ○ ○ (29세) 기간: 2010/7~2010/12 관서: 경찰청 죄명: 청소년성보호법

※ 경찰청 요청에 따라 이름과 눈을 가렸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8월 5일 현행 공개수배 제도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남용돼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⁴³⁾ 인권위는 공개수배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

의자의 얼굴을 널리 알게 되었고 최단 시간에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다.

43) “인권위에 따르면 7씨는 지난해 7월 특수절도 혐의로 공개수배가 된 뒤 자수를 했으나 이후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수배 사진이 널리 유폐됐다. 7씨의 가족들은 7씨 본인은 물론 자신들까지 모멸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이 공개수배에 관한 규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기 때문에 경찰청 예규나 훈령이 아니라 법률로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공개수배의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개수배 규정을 준수할 것과 인터넷 공개수배의 경우 피의자 검거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복제·유통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배 대상자 선정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⁴⁴⁾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인터넷에 있는 공개수배자 사진 등을 화면캡처나 복사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피의자 사진 등이 퍼지지 않게 조치하였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 환경에서 화면캡처나 저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배자 정보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신속성과 파급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모바일 단말기에서 수배자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FBI의 수배유형 중 Ten Most Wanted에 지금까지 게재된 484명의 피의자 중 체포된 454인의 피의자 검거의 단서 중, 시민의 제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147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특성 내지는 피의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인터넷 공개수배가 일정한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⁴⁵⁾

따라서 향후 스마트폰의 화면캡처를 방지하는 기능이 나오게 되면 해당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단말기 OS(iOS, 안드로이드, Windows

지적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한 뒤 6개월이 지나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한해 공개수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7씨의 경우 지명수배 2개월이 되기도 전에 공개수배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황경상, “인권위 “공개수배 남용 말라””, 경향신문(news.khan.co.kr, 2010. 11. 29 검색).

44) 위의 글.

45) 김성용,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 치안정책연구소, 2007, 114면.

Mobile, 심비안 등)별로 경찰이 직접 공개수배자 정보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하는게 좋을 것이다.

2. m.182.go.kr 실종아동 정보 검색방식 개선

현재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모바일홈페이지(m.182.go.kr)에서는 실종아동검색, 전국보호시설안내, 실종·보호신고, 트위터 연결, 실종·범죄예방 정보, 182센터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종아동검색 서비스 경우 <그림 26>과 같이 이름과 특징을 입력하여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검색 결과가 수십 명을 넘는다면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검색결과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이를 <그림 27>과 같이 주요특징을 제시한 메뉴방식으로 선택하여 검색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한다면 좀 더 쉽게 실종아동을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메뉴방식 외에도 주요키워드(실종자 특징 등)를 나열한 검색방식 등 모바일 환경에 어울리는 검색방식이 있을 것이다. 만일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개방한다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실종아동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민간에서 개발되어 무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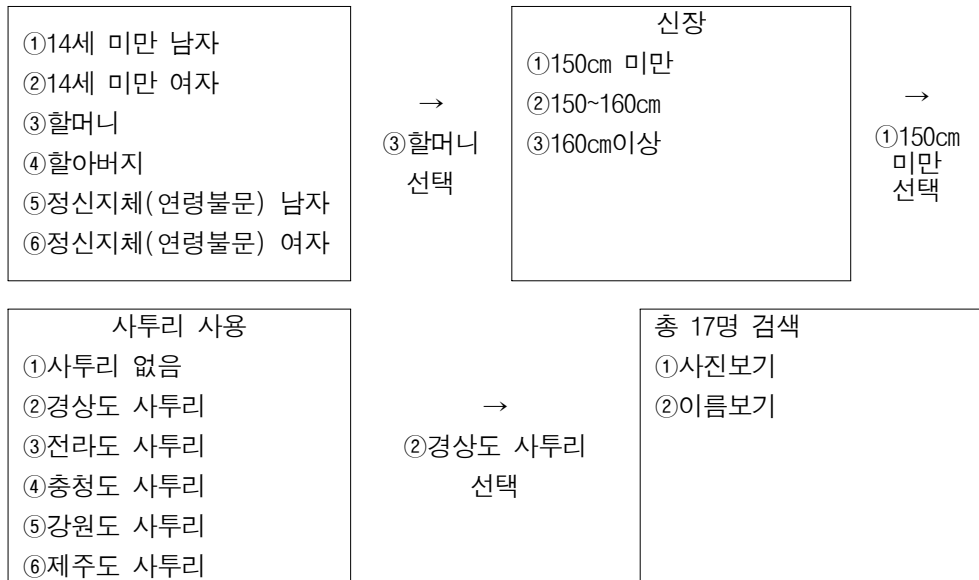
<그림 26> 경찰청 모바일 실종아동찾기센터의 실종아동검색



실종아동 리스트

실종아동 상세정보

<그림 27> 메뉴선택을 이용한 검색방식 시나리오의 예



출처: 권태형, 경찰 무선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활용을 통한 경찰행정 선진화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67면 참조.

3.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알리미 넷두루미(net-durumi.netan.go.kr)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네탄(wwwi.netan.go.kr)에 신고된 쇼핑물 사기, 온라인거래 사기에 사용된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 이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를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다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8>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알리미 넷두루미



4. 유실물 정보

사이버112(cyber112.police.go.kr) 국민마당에서는 각종 분실물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아보기를 원할 것이다.

<그림 29> 사이버112 습득물 검색 서비스(리스트)

습득물 마당

제목 ▾

검색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43660	애니클 흰색(10-2690)	남대문경찰서	2010/12/03	6
43659	싸이언 흰색(10-2689)	남대문경찰서	2010/12/03	3
43658	10-1386(화장대+서랍장)	송파경찰서	2010/12/03	2
43657	싸이언 청색(10-2596)	남대문경찰서	2010/12/03	0
43656	애니클 검정색(10-2595)	남대문경찰서	2010/12/03	5
43655	싸이언 검정색(10-2594)	남대문경찰서	2010/12/03	2
43654	애니클 검정색(10-2635)	남대문경찰서	2010/12/03	5
43653	검정색SHOW폰(10-2634)	남대문경찰서	2010/12/03	7
43652	애니클 연두색(10-2633)	남대문경찰서	2010/12/03	1
43651	리콘디카(10-2623)	남대문경찰서	2010/12/03	4
43650	애니클 흰색(10-2528)	남대문경찰서	2010/12/03	2
43649	애니클검정색(10-2526)	남대문경찰서	2010/12/03	2
43648	회색싸이언(10-2527)	남대문경찰서	2010/12/03	0
43647	회색EVER폰(10-2524)	남대문경찰서	2010/12/03	1
43646	후디 디카(10-2525)	남대문경찰서	2010/12/03	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그림 30〉 사이버112 습득물 검색 서비스(습득물 상세정보)

제목	구형노트북
글번호	44586
작성자	서울 성동서
작성일시	2010/12/03 13:42
조회수	9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수관서 : 서울성동경찰서 2. 관리번호 : '10-787 3. 습득일 : '10.10.30 4. 습득지역 : 서울 5. 습득장소 : 지하철 6. 품목특징 : 구형노트북(삼성) 7. 보관장소(연락처) : 서울성동경찰서 생활질서계(02-2286-0435) </div>

◀ 이전
다음 ▶
목록

5. 지도 정보

경찰 내부망에서는 교통사고지도, 시설물 지도, 성범죄 지도⁴⁶⁾, 공조 수사, 외국인 체류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도쿄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하였으며, 런던 경찰국에서는 2008년부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범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제공하는 범죄정보를 민간이 활

46) 성범죄지도는 경찰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sexoffender.go.kr)가 있다.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성범죄지도 정보를 중복해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용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⁴⁷⁾

범죄지도의 일반공개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어왔다. 찬성측은 범죄지도의 공개이후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본다. 즉 어느 지역의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 어느 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 범죄율도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범죄지도의 공개는 피해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치안불안 지역이 타지역과 비교되어 공개될 경우 지역간 갈등, 학생유치 문제, 집값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지도의 공개는 외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⁴⁸⁾

반면, 교통사고 지도의 경우 차량용 내비게이션에서 사고다발지역을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고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지도와 같은 공공정보를 우선 개방하고, 범죄지도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정보는 외국의 시행결과에 따른 효과 등을 참고하여 추후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외에 전국의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교통초소 등) 위치정보를 제공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경찰관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7) 하혜영, “외국의 범죄지도 공개·활용사례와 도입 논의방향”, 이슈와 논점 제4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2-3면 참조.

48) 위의 글, 4면.

제2절 경찰 공공정보 제공 방안

1.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제고

무엇보다도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공공정보를 담당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지휘관은 반드시 모바일 환경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모바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구형 휴대폰으로 전화와 문자만 이용하는 것으로는 지금의 모바일 환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는 ‘공공정보는 공개하면 귀찮아 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하면 어떤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공공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담당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위탁교육,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2. 경찰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정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정보 제공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45호, 2010. 7.7)’ 제5조(제공대상정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정보 제공 지침[시행 2010.7.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2010.7.7]

제5조(제공대상정보) ①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는 모두 제공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공공정보
2.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② 국가기관등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의 정보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2. Open API, 다운로드, 시스템 연계 등 제공방식
3. 네트워크 트래픽, 제공 횟수 제한 등 제공조건
4. 원문, 메타정보제공 등 제공범위

이에 따라서 경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정보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경찰은 다른 기관과 달리 국가안보, 재판관련, 범죄예방, 수사 등과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를 먼저 식별하고 일반에게 제공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후 해당정보에 대한 공공정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정확하게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비공개대상정보 외에 경찰의 공공정보 목록을 작성⁴⁹⁾하여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 공공정보 목록에는 동 지침 5조 3항에 따라 권리관계, 제공방식, 제공조건, 제공범위를 명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9)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DB)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DB)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공공정보 공개업무는 경찰청의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는 경무과(민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공공정보 공개와 관련된 상급 법령, 지침을 반영하여 ‘경찰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하도록 한다. 이 지침에는 공공정보 공개기준, 관리체계, 공공정보 심사 항목, 공개절차, 담당 직원의 업무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국·관이 참여하는 ‘경찰 공공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공개 사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3. 공공정보 관리방안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DB)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DB)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경찰의 공공정보를 관련 법령들과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준수하면서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공공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공공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고 공공정보의 신속한 현행화가 필요하다. 이는 곧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정보제공과 활용이 용이한 경찰 공공정보(DB)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첫째, 공공정보(DB)를 민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즉, 비표준 기술(Active X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웹표준화를 추진하고, 공공정보는 OPEN API, RSS, XML 등으로 데이터를 쉽게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DB)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각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단위로 전국에 걸쳐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DB)를 경찰청 해당 국관기능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현황 파악·현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4. 앱 공모전을 통한 다양한 경찰서비스 창출 촉진

경찰에서 직접 모바일 서비스(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웹)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산관계로 서비스 개발을 적시에 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한 가지 서비스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공모전 사례를 참고하여 ‘경찰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한다. 경찰에서는 공모전에서 이용할 공공정보 DB를 정하고 ‘관만 벌이면’ 될 것이다. 관련 부처, 기업, 협회의 협조를 얻으면 예산·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에서만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보다 공모전을 통하면 기발하고 편리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공모전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치안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사항도 도출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시대에 앞서나가는 첨단경찰 이미지 형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2010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여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스마트폰 기반 전자정부 추진 전략세미나’는 정부 및 민간에서 예상인원을 훨씬 넘는 참석자로 그 열기가 대단하였다. 정부기관에서 온 참석자들은 대부분 ‘우리 기관에서도 뭔가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해야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다’라고 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정부가 공공정보를 내 놓으면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의욕이 넘쳤다.

참여, 개방, 공유의 Government 2.0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대처하는 정부기관에서는 발 빠르게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로 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공공정보를 자기 기관의 POWER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공공정보 개방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 복지부동하는 정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다. 경찰은 과연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가?

본 연구는 경찰이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모바일 경찰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 공공정보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모바일에서 이용하였을 때 효과가 높은 공공정보를 우선적으로 도출한 결과 공개수배자 정보, 실종아동 정보,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유실물 정보, 지도정보 등이 있었다.

경찰이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은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모바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경찰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국·관이 참여하는 ‘경찰 공공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셋째, 공공정보(DB)를 민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DB)는 경찰청 해당 국관 기능에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하며, 비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찰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경찰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은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모바일 경찰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특성상 민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경찰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제공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은 조직의 특성상 공공정보 개방이라는 화두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정부와 Government 2.0을 선도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은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는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경찰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치안서비스는 향상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경찰은 국민 곁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DB포럼,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Workshop, 2010.

경찰청, 미래비전 2015, 2009.

김성열 외, 모바일인터넷 프로그래밍 :

무선인터넷프로그래밍/WML/WMLScript, 내하출판사, 2007.

대한민국정부, 200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2010.

전종수 외, "Gov 2.0 시대의 공공정보 및 공공서비스 활성화 전략", CIO리포트 2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하혜영, "외국의 범죄지도 공개·활용사례와 도입 논의방향", 이슈와 논점 제4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기반 전자정부 추진 전략 세미나, 2010.

행정안전부. 2010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2010.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 제공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지침 공청회, 2010.

KT경제경영연구소, 모바일 오피스 구축의 경제적 효과, 2010.

2. 논문

권태형, 경찰 무선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활용을 통한 경찰행정 선진화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권태형 외,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찰서비스 활용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치안정책연구소, 2010.

김성용,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 치안정책연구소, 2007.

박성수, “유비쿼터스 경찰서비스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

3. 기타

권현영,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Workshop:공공정보 활용의 법·제도적 쟁점”,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국가DB포럼, 2010.

남영준,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Workshop:해외 공공정보 개방사례와 시사점, 제안”, _____, 2010.

강세훈, “올해 스마트폰 700만 시대 열린다”, www.newsis.com .

강은성, “서울시도 와이파이...KT와 협의 시작”,
<http://itnews.inews24.com> .

권해주, “아이폰 1년새 162만명.. 국산앱 작년比 3배 증가”,
<http://www.fnnews.com> .

김태열, “스마트폰 ‘열려라, 무료 무선인터넷’”, Weekly 경향, 2010년 872호.

네이버 백과사전, 100.naver.com .

- 김인순, “모빌리티 오피스 구축 사례”, <http://www.etnews.co.kr> .
- 김정태, “홈쇼핑업체, 모바일 쇼핑 주도한다”, <http://www.mk.co.kr> .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부·행안부·경기도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0.10.29.
- 정종오, “경기도‘전지역에 와이파이존 구축한다””,
<http://itnews.inews24.com> .
- 주민영, “모바일 환경에 대처하는 뉴욕시와 서울시의 다른 자세”,
<http://www.bloter.net/archives/25140> .
- 황경상, “인권위 “공개수배 남용 말라””, news.khan.co.kr .

II. 외국문헌

1. 단행본

Morgan Stanley, The Mobile Internet Report, 2009.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0, 2010.

2. 기타

www.data.gov

FlyOnTime.us

www.epa.gov/myenvironment

crimespotting.org

data.gov.uk

data.australia.gov.au

Ⅲ. 기타

1. 도움주신 분

김경숙 경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정엽 책임,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활용센터.

김재근 경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김창주 경위, 경찰청 대변인실.

배진근 경위,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

조금희 경위, 경찰청 경무과.

[부록]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2010. 7.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DB등의 정보로서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3. "공표"라 함은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기관등의 공공정보 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공원칙) 국가기관등은 국민이 공공정보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제공대상 공공정보 및 제공 대상자

제5조(제공대상정보) ①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는 모두 제공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공공정보
2.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② 국가기관등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의 정보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2. Open API, 다운로드, 시스템 연계 등 제공방식
3. 네트워크 트래픽, 제공 횟수 제한 등 제공조건
4. 원문, 메타정보제공 등 제공범위

제6조(제공대상자) 이 지침에 따라 공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연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제7조(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활용 가능한 공공정보 목록 안내
2. 공공정보 제공관련 국가기관등과 이용자간 협의중재 및 계약지원
3. 국가기관등의 공공정보 제공대행
4. 그 밖에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발굴 및 시행

제3장 공공정보 제공의 신청 및 처리

제8조(공공정보의 제공 신청) ①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또는 지원센터에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이 공표한 공공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

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전송속도 저하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차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지원센터의 공공정보 제공 신청 처리) 지원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동 신청서를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청받은 공공정보를 지원센터가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지원센터가 직접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정보 제공 신청의 처리) ① 국가기관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2호의 양식으로 제공여부를 통지하고 그에 따라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3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여부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서식 제2호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필요시 지원센터에 공공정보 제공 대행, 계약지원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제공신청 처리) ① 국가기관등은 신청받은 공공정보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보유한 공공정보의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자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정보 제공방법 및 비용부담

제12조(제공방법)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 제공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서비스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네트워크 트래픽 제한 등 제5조제3항제3호의 명시된 제공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부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제공조건을 달리하여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를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실비는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비용, 제공에 소요된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을 말한다.

제14조(제공 중단 등의 조치)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자가 별지서식 제2호의 제공조건을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자가 국가기관등이 명시한 제5조제3항제1호의 권리관계를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3. 정보시스템에 상당한 부하가 발생하여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정보 제공신청서

신청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정보명				
이용목적				
이용기간				
제공방법 (희망하는 제공방법에 대한 우선순위 표시)		구분		우선순위(1~3)
		<input type="checkbox"/> 웹(HTML 등) 과실		
		<input type="checkbox"/> OpenAPI, API, 시스템(DB) 연계 등		
		<input type="checkbox"/> 파일 다운로드(온라인)		
		<input type="checkbox"/> 파일 배송(전자기록매체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정보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증

접수번호		신청인 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 공공정보 제공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공공정보 (□제공 □보류 □미제공) 결정통지서

수신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공 공 정 보 명			
제 공 내 용			
제 공 방 식	<input type="checkbox"/> 웹(HTML 등) 파싱 <input type="checkbox"/> OpenAPI, API, 시스템(DB) 연계 등 <input type="checkbox"/> 파일 다운로드(온라인) <input type="checkbox"/> 파일 배송(전자기록매체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 공 조 건 (비 용 및 수 수 료)			
제 공 일 시			
미제공(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귀하의 공공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정보 제공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기관의 장) [인]</p>			

책임연구보고서 2010-19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경찰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영 식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